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.

제10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·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(심의안건제출)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당과여비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'94. 2. 15

다. 상정일자 : '94. 2. 24

라. 의견일자 : '94. 3. 17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

나. 제안사유

- 부천시 중부노인 종합복지회관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를 변경코자 함.
- 제1조(목적) “부천시 노인복지회관”을 “노인복지회관”으로,
- 제2조(위치) 회관은 부천시 남구 소사동에 둔다를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산 64번지에 소재하는 회관을 부천시 남부노인복지회관이라 하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0-46번지에 소재하는 회관을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 한다.
- 제3조(시설)중
 - 제6호의 “구내매점 및 식당”을 “구내매점 및 식당 겸 휴게실”로 하고,
 - 제7호부터 제13호를 신설
 - － 제7호(경로당)
 - － 제8호(이·미용실)
 - － 제9호(상담실)
 - － 제10호(물리치료실)
 - － 제11호(독서실)
 - － 제12호(에비실)
 - － 제13호(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)
- 제4조(업무)중 제6호부터 제9호를 신설
 - － 제6호(노인 건강상담 및 물리치료실 운영)
 - － 제7호(노인 지위향상을 위한 독서실 운영)
 - － 제8호(이·미용실 설치 운영)
 - － 제9호(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)

3. 질의 및 답변내용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노인복지회관을 소사구 노인복지회관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지으면 어떻겠는지?	○ 원미구가 노인복지회관이 없어 구의 명칭을 따라 이름을 지을 수 없어 부득이 중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음.
○ 중부 노인복지회관 내에 이·미용실, 물리치료실 시설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?	○ 이·미용실, 물리치료실 이용노인은 모두 무료이며, 운영보조금 이외 추가 소요예산은 YMCA에서 충당하기로 되어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현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에 더 많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노인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

5. 수정안 내용 : 해당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-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중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앞으로 더 많이 지어야 될 것이며,
- 현재 미등록 노인회도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함.

8. 기타 필요사항 : 없음

9. 체계적 심사내용 : 없음

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55
의 결 년 월 일	94. 5. 12 (제28회)

제출년월일 : 1994. 2. 1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사유

- 부천시 중부노인 종합복지회관 신축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를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1조(목적)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_____ 노인복지회관
- 제2조(위치) 부천시 남구 소사동 _____
 -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산64, 부천시 남부 노인복지회관
 - 부천시 오정구 여원동 10-46, 부천시 중부 노인종합복지회관
- 제3조(시설) _____ 7 - 12호 신설
- 제4조(업무) _____ 6 - 8호 신설

현	행	개	정
제2조(위치) 회관은 부천시남구소사동에 둔다. (생략)		제2조(명칭 및 위치)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산 64번지에 소재하는 회관을 부천시 남부노인복지회관이라하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0-46번지에 소재하는 회관을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 한다.	
제3조(시설) (“생략”) 1-5(생략) 6. <u>구내매점 및 식당</u> 7. <u>기타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</u> (신설) " " " " "		제3조(시설) (“현행과 같음”) 1-5 (현행과 같음) 6. <u>구내매점 및 식당 김 휴게실</u> 7. <u>경노당(한: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)</u> 8. <u>이·미용실(")</u> 9. <u>상담실(")</u> 10. <u>물리치료실(")</u> 11. <u>독서실(")</u> 12. <u>에비실(")</u> 13. <u>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</u>	
제4조(업무)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 1-5(생략) 6. <u>기타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</u> (신 설) (")		제4조(업무) ----- 1-5(현행과 같음) 6. <u>노인건강상담 및 물리치료실운영</u> 7. <u>노인지위향상을 위한 독서실운영</u> 8. <u>이·미용실 설치운영</u> 9. <u>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</u>	